

## 중국, 기업결합 심사규정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 10. 23. <기업결합심사 임시규정>(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이하 “심사규정”)을 공표하여 2020. 12. 1. 시행하게 됩니다.

심사규정은 지난 십여 년간 각 법령과 하위규정들에 산재되어 있던 기업결합신고와 심사규정들을 통합하여 기업결합심사의 실체적, 절차적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 사항을 소개하는바, 중국에서 기업결합신고 이슈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그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지배권에 대한 판단기준 명시

<p><b>지배권 판단 시 고려요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목적과 계획, 거래 전후 지분구조와 변화, 주총과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의결제도, 고급관리인원의 임면제도, 주주와 이사 간의 특수관계, 사업자간의 중대 비즈니스나 합작계약 존부 등</li> <li>- 실제상황에 따라 위 요소들에 대한 종합 검토</li> </ul>
<p><b>경쟁에 대한 영향력 평가 시 고려요소</b></p>	<p>반독점법에서 규정한 고려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함. 단, 심사실무에서 아래 모든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안의 실제상황에 따라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지배력: 기업결합 참여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품·서비스의 대체성, 판매시장·원자재공급시장에서의 지배력, 자금력과 기술조건, 시장구조, 기타 사업자의 생산력, 고객의 구매력과 공급상 전환능력,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효과 등</li> <li>- 시장집중도: 관련 시장 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 등</li> <li>- 시장진입: 사업자가 생산요소, 매출과 구입채널, 핵심기술과 설비 등의 지배방식으로 시장진입에 영향 주는 상황 및 그 진입의 가능성, 적시성과 충분성</li> <li>- 기술진보: 신기술 개발동력,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투입과 이용, 기술자원통합 등</li> <li>- 소비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가격, 품질, 다양화 등</li> <li>- 기타 사업자: 동일한 관련 시장, 상하방시장이나 관련시장 사업자의 시장진입, 거래기회 등 경쟁조건</li> <li>- 국민경제발전: 경제효율성, 경영규모와 관련 산업의 발전</li> </ul>
<p><b>매출액 산정기준 세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산정대상은 기업결합신고 당시 사업자와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li> <li>- 기업결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매출액은 당해 사업자 및 신고 당시 당해 사업자와 직·간접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임. 단, 위 사업자간의 매출액 불포함</li> <li>-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고 양도인이 더 이상 당해 양도분에 대해 지배권이 없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 대상사업자의 매출액은 취득한 당해 부분의 매출액만을 포함함</li> <li>- 기업결합에 참여한 사업자 간에 또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사업자와 미참여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지배하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기업결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매출액은 공동으로 지배하는 사업자와 제3의 사업자간의 매출액을 포함하나 당해 매출액은 한번만 산입됨</li> <li>- 금융업사업자의 매출액은 &lt;금융업사업자의 결합신고 매출액산정방법&gt;에 따름</li> </ul>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 • 심사의 절차적 규정 보완

신고의무자의 범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으로 인한 기업결합에서 합병에 참여한 각 당사자들은 모두 신고의무자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지배권을 취득하였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의무자임</li> <li>- 한 건의 기업결합에 다수의 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신고의무자에게 위탁하여 신고 가능</li> <li>- 단, 위탁받은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시, 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li> </ul>
약식사건 범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식사건의 적용범위 및 제외범위 명시</li> <li>- 단, 여전히 기존 &lt;기업결합 약식사건신고 지도의견(시행)&gt;에 따라 신고서류를 준비하고 신고의무 이행 필요</li> </ul>
조사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조사 : 60일 → 30일</li> <li>- 본조사 : 180일 → 120일</li> </ul>

## • 법률책임 강화

신고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만, 허위자료 제공에 대한 신고인의 법률책임 규정</li> </ul>
수탁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 외에도 과태료 부과</li> <li>- 처벌 후 5년 내 수탁인 선임금지</li> </ul>
분리업무매수인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를 불이행하여 제한적 요건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정명령 및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증설</li> <li>- 분리업무란 기업결합의 제한적 요건에 따른 유형자산, 지재권 등 무형자산이나 관련 권익 등의 박리(剝離)를 뜻함</li> </ul>

<p>나승복 <a href="mailto:sbn@yoonyang.com">sbn@yoonyang.com</a>      TEL. 02-6003-7137</p>	<p>법무법인(유) 화우 (YOON &amp; YANG LLC)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9층 (우)06164 TEL: 02-6003-7000 FAX: 02-6003-7036 <a href="http://www.hwawoo.com">www.hwawoo.com</a>; <a href="http://www.yoonyang.com">www.yoonyang.com</a></p>
<p>박정란 <a href="mailto:jrpark@yoonyang.com">jrpark@yoonyang.com</a>      TEL. 02-6003-7539</p>	
<p>송찬미 <a href="mailto:cmsong@yoonyang.com">cmsong@yoonyang.com</a>      TEL. 02-6182-8168</p>	

중국팀 소개자료

지난 뉴스레터 보기